

## 2019년 상반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현황

구분	순번	자문내용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1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 확정판결에 관한 후속조치 관련 법률 자문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입학 처리에 관한 법률 자문	
	3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 확정판결문에 관한 해석 및 후속조치 관련 법률 자문	
	4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5	하도급업체 공사 준공합의 거부 시 준공금 지급 관련 법률 자문	
	6	불법하도급 및 대금 미지급 관련 책임문제와 원도급사 대표 고발 건 관련 자문	
	7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통지서 내용 관련 법률 자문	
	8	교사의 카카오톡 첫 화면의 부적절한 내용에 관한 민원조사 처리를 위한 법률 자문	
	9	사립유치원에 부당지급된 교원 처우개선비 회수 관련 법률 자문	
	1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토지 매입에 소요된 학교회계 지출금 환수 관련 법률 자문	
	11	교복납품 관련 법률 자문	
	12	A고 00관 증축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설계용역 관련 법률 자문	
	13	교원 징계 자료 정보공개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14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항소제기 여부 법률 자문	
	15	고발, 수사 중인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가능 여부 법률 자문	

구분	순번	자문내용	비고
	16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따른 절차 관련 법률 자문	
	17	A외국어학원 민원 관련 행정처분 법률 자문	
	18	A외국어학원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자문	
	19	사립유치원 변경인가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20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항소제기 여부 법률 자문	
	21	00초 이전에 따른 기본협약서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한 법률 자문	
	22	지분이전등기 판결 경정 관련 법률 자문	
	23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관련 법률 자문	
	24	망자에 대한 판결 경정 관련 법률 자문	
	25	사립유치원 직원 징계에 관한 법률 자문	
	26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항소 제기 여부 법률 자문	
	27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정보공개시 정보공개법 준용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	
	28	정보공개 처리 관련 법률 자문	
	29	집행정지인용 결정에 따른 항고 제기 관련 법률 자문	
	30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정보공개시 정보공개법 준용 관련 법률 자문	
	31	사립유치원 인가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1	
	32	사립유치원 인가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2	

구분	순번	자문내용	비고
	33	000000센터 위탁경영 계약서 관련 법률 자문	
	34	000000센터 생존수영 위탁계약 계약해지 조항 해석 관련 법률 자문	
	35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항소 제기 여부 법률 자문	
	36	00초등학교 지적측량을 이유로 한 주거지 무단침입 관련 법률 자문	
	37	태양광발전설비 미지급금 관련 법률 자문	
	38	학교급식계약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39	방과후 위탁용역 업체의 채권양도 관련 법률 자문	
	40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공고 관련 법률 자문	
	41	급식업체 계약 해지 및 부정당제재 관련 법률 자문	
	42	재학생 사망 관련 법률 자문	
총계		42건	

※ 동일한 자문내용에 대해 2명 이상의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경우는 1건으로 간주

# 법 률 자 문 결 과 보 고 서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 확정판결에 관한 후속조치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교육부가 인정도서의 인정, 가격조정명령 등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을 하였는데, 이 위임사무는 기관위임 사무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중 교과서 대금(차액 및 이자)의 지급주체 문의	<input type="checkbox"/> 기관위임사무임 <input type="checkbox"/> 검정도서는 교육부가 부담, 인정도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교육부가 더 많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검정도서는 교육부가 부담, 인정도서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교과서 대금은 000교육청이 물품계약 형식으로 교과서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금지급의무 주체는 000교육청임 <input type="checkbox"/> 교육부가 부담
		<input type="checkbox"/> 시도교육청이 교과서대금 차액(이자 포함)을 지급해야 된다면, 가격조정명령을 내린 해당교육청이 전국에 사용된 교과서의 차액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지, 해당 교과서를 사용한 교육청이 사용한 교과서만큼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교과서를 사용한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
		<input type="checkbox"/> 협상이 마무리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출판사 측에 대금을 지급하고 교육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협상이 결렬되어 출판사 측에서 민사소송(국가배상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시도교육청에서 패소하여 대금을 지급한다면 교육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출판사가 000교육청을 상대로 교과서 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민국(소관 교육부장관)에게 소송고지를 함. 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교육부를 상대로 보통교부금 청구와 보통교부금 교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input type="checkbox"/> 구상권 청구 가능함. 단 교과서 대금(차액 및 이자) 부담의 주체가 교육부이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구상권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은 수익자부담으로 지급하여 현실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비용도 부담하라는 입장인바, 교육청에서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에서 부담할 이유 없음. 교육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2	<b>학교폭력 가해학생 전입학 처리에 관한 법률 자문</b>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A중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받은 가해학생(체육특기자)이 올해 A중에 피해학생(체육특기자)이 재학 중인 상황에서 인접한 B고로 전입학(체육특기자) 신청할 경우 [A중과 B고는 같은 재단임]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0항 “피해학생 소속 학교” 를 B고까지 확대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적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지 않은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17조 제10항을 본 사안에도 적용하는 것이 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함 또한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강제전학 처분으로 이루어진 최초 전학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위 사안은 법 제17조 제10항이 적용되어 가해학생은 B고로 전학 불가 <input type="checkbox"/> 피해학생 재학교와 가해학생 희망교의 지리적 인접성, 체육특기생의 훈련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고, 체육특기생인 피해학생이 B고로 진학할 것이 예측되는 바, 전입학 불허는 타당함 <input type="checkbox"/>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족된다면, A중과 B고는 동일 학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입법취지에 비추어 두 학교를 동일학교로 넓게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두 학교가 장소적,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체육활동을 함께 있어 동일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두 학교가 동일학교라고 볼 수는 없음. 또한 시행령 제20조 2항, 4항 규정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20조 2항은 학교폭력 강제전학 처분 받은 최초 전학의 경우만이 아니라, 그 후 상급학교 전입학 배정 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3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 확정판결문에 관한 해석 및 후속조치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출판사 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서 출판사의 희망가격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해줬다고 주장을 합니다.(판결문 내용 중에 출판사가 결정한 가격 또는 희망하는 가격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 그렇다면 희망가격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희망가격 산출의 오류 등으로 부풀려진 희망가격에 대해서는 출판사에게 수정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판결문에 희망가격이 부당한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한 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일 뿐, 희망가격이 부당한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문구에 기속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절차적인 흠결이므로 보완한다면 희망가격 수정 요구는 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관력이란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 및 그의 승계인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이므로 판결 주문 중 표시된 소송물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들이 결정한 희망가격이 부당한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 고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기관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출판사에게 데이터오류로 잘못 책정된 희망가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주장할 수 없음. 출판사를 대리한 (사)A협회의 제안(2015년 공문)에 대해서 교육청이 계약 당사자로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거나, 쌍방 당사자 사이에 정식 서면에 의하여 2015년 공문 내용에 따라, 추후 인상된 금액을 교육부나 교육청이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시도교육청의 주장은 법률상 구속력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려움
4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민간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면, 위원장으로서 행사한 행위는 유효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민간위원 신분 유지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민간위원 신분 유지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유효한 심의행위임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5	하도급업체 공사 준공합의 거부 시 준공금 지급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하도급업체 2곳의 준공합의가 거부되어 준공금 청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원도급사와 하도급업체 8곳에 대해 준공금을 지급하고, 준공합의 거부 하도급업체 2곳의 계약금액 중 준공잔액을 공탁처리 해도 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준공합의 거부 2업체 공사대금 변제공탁 가능, 나머지 하도급업체에는 직불 약정시 직접 지급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전체 하도급업체의 준공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준공금 전액을 변제공탁하는 것이 적절함 <input type="checkbox"/> 준공합의 거부자가 대금 수령 거부함에 따라 공탁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공탁처리 했을 경우, 추후 준공금 지급 건과 관련하여 교육청이 소송 등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변제공탁에 의해 법원이 준공금을 받을 권리자를 가려내어 결정하게 되므로 준공금에 의한 분쟁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 실시해야 하며, 채무전부에 대한 공탁을 하더라도 향후 2개 업체가 채무액수 다툼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어, 이에 휘말릴 가능성 있음
6	불법하도급 및 대금 미지급 관련 책임문제와 원도급사 대표 고발 건 관련 자문	<input type="checkbox"/> 하도급업체 D사의 소송에서 연대책임(A,B,C사)으로 지급명령이 난 3개 업체 중 A사를 제외한 B, C사와 D사간 합의에 의해 소를 취하했을 때, A사의 지급명령에 대해 법적 효력이 남아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A사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합의를 쓰지 않은 A사는 지급명령에 대한 법적책임은 있으나, 폐업으로 법인격이 소멸되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B사와 C사가 채권자와 합의에 의해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지급명령의 효력은 남아있음
			<input type="checkbox"/> A사는 폐업신고는 하였지만 청산절차를 거쳐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법인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지급명령은 효력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A사는 폐업신고는 하였지만 청산한 것이 아니면 채무는 남아 있음. A사에 대한 미지급금 청구 가능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input type="checkbox"/> D사가 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D사가 A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지분별 금액을 관리감독 소홀로 교육청에 지급을 청구하고 교육청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체결 당시 노무비 구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는지 등 교육청이 해야할 임무를 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여부가 결정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이 수급회사의 노무비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귀청에 관리감독 소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은 A사와 D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기에 노무비 구분관리를 할 수 없었던 점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의무는 없음  <input type="checkbox"/> D사의 소송 청구는 가능하나, 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 입증할 수 있는지 불분명함  <input type="checkbox"/> A사에 대한 채권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등이 없는 상황에서 A사에 대해 대금지급을 완료한 교육청은 D사에게 추가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input type="checkbox"/> D사가 주장하는 관리감독 소홀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법적책임 등 구체적 사안을 놓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A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원도급사와 준공정산 합의,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한 이상 D사에 별도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이 폐업한 A사 또는 A사 대표를 상대로 고발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고발사유가 불분명함 <input type="checkbox"/> 폐업한 A사에 대한 책임을 당시 대표였던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해당 법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법인인 A사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없으므로 고발은 불가, 단 대표자가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고발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산등기를 하지 않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A사를 하도급 계약체결 통보하지 않은 이유로 고발 가능, A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미통보 등의 위반사실에 대해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해 고발조치 취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폐업한 A사의 대표를 상대로 고발은 가능하며, 불법하도급 불공정 행위나 사기를 이유로 고발 할 필요 있음
7	<b>교육부</b> <b>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통지서 내용 관련 법률 자문</b>	<input type="checkbox"/>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서의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input type="radio"/> 주문: 청구인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건책으로 변경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학생에 대한 00 혐의가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학생을 교육 지원하는 교원으로서 교육적인 면을 사려 깊게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학생을 지도함으로써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 혐의가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처리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는지 여부</li> <li>- 건책 결정이 00 혐의와 관련은 있지만 감경된 것인지, 아니면 00 혐의와 별개로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변경된 것인지 여부</li> </ul>	<input type="checkbox"/> 00에 관한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것이고, 00혐의와 별개로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건책 결정이 된 것으로 판단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8	교사의 카카오톡 첫 화면의 부적절한 내용에 관한 민원조사 처리를 위한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교사의 카카오톡 첫 화면에 “노00 죽인 놈들 나와!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및 제14조(교원)의 위반 여부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안 됨
9	사립유치원에 부당지급된 교원 처우개선비 회수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2012.7월부터 2013.2월까지 A사립유치원 원장에게 부당지급된 교원 처우개선비 총 3,150,000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소멸시효 기산점 : 2013. 2월부터 - A사립유치원에 대한 조사 결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기산점은 2013.2.경입 - 만일 교원 처우개선비를 속여서 지급받은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 때는 손해를 안 때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진행하나, 이 경우에도 불법 행위가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채권 역시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므로 의미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소멸시효 기산점 :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시점 - 이 사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조사 결과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남았다고 할 것임
1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토지 매입에 소요된 학교회계 지출금 환수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토지매입에 소요된 17억원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았을 때 - 보조금 정산 후 회수조치 할 수 있는지 여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폐쇄신청 시 폐쇄인가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그동안 지급한 보조금을 정산 후 회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폐쇄신청 하는 경우 폐쇄인가는 불가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학교회계에서 지출된 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의 금액을 학교회계에 편입조치토록 요구함은 당연하며, 학교회계에 편입조치 이행여부 및 학교회계를 포함한 재산의 처리방법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등을 검토한 후에 폐쇄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17억원을 교비로 환입하지 않은 사유로 그동안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용도 외 사용’ 을 이유로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반환명령을 발한 후 회수할 수 있으나,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정산한 후 회수하는 것은 불가하고, 편입하지 않고 폐쇄신청을 해 올 경우 폐쇄인가는 불가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사업인가 후 시설운영을 조건으로 여러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인가도 운영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input type="checkbox"/> 편입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입조치를 하도록 하고 폐쇄인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보조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즉시 시설의 소유가 된다고 하면 편입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인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17억원을 편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 정산 또는 교부결정취소로 인한 보조금 회수는 어려워 보이며, 17억원 미편입 시 폐쇄인가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됨
		<input type="checkbox"/> 토지 매각으로 시세차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학교회계 편입조치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매매차익에 대해서 교비로 편입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지급한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익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input type="checkbox"/> 시세차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 학교회계 편입조치 가능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1	교복납품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교가 계약 특수조건에 교복 생산년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교복업체로부터 재고품을 납품받았을 때 이를 계약불이행 또는 위법으로 간주하여 업체에게 신상품 교환 또는 일정 가격 할인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업체의 계약불이행 여부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재고품 납품이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고발할 수 있는 사유로 성립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령 또는 법규로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모든 물품은 신품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므로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는 모든 물품을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의하여 ‘납품업자는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하고 학생의 신체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규정하므로 신품을 납품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재고품 납품을 한 업체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에 해당하므로 부정당업자로 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신품으로 알고 신품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하도록 한 점은 일종의 사기행위로 볼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교복 생산연도 표기여부와 관계없이 교복 납품업자는 계약 위반을 한 것이므로 부정당업자로 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제재나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경우는 재고품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신품에 상응하는 교복 값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12	A고 00관 증축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설계용역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A고 00관 증축공사 중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건물 배치 및 높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재설계를 진행해야 함에 있어, 기존 설계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는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존 설계자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기존 설계자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이 위 법률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해석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input type="checkbox"/> 이미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고, 단지 기존 건물배치가 변경되는 정도의 사항이라고 한다면 기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 또는 단순히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3	교원 징계 자료 정보공개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교원 징계 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 시, 정보공개 청구 목록별 비공개 근거 사유가 적절한 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 청구를 한 자료들은 개인정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로서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4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항소제기 여부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유치원 감사결과 및 적발된 유치원명, 원장 실명을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감사결과는 부분공개, 유치원명과 원장 실명은 비공개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자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됨. 항소 제기 검토를 위한 “항소제기여부” 자문 요청	<input type="checkbox"/> 불복항소하더라도 원심 판단이 번복될 가능성은 적어 항소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15	고발, 수사 중인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가능 여부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설립자를 00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폐쇄인가를 신청한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폐쇄신청서의 서류를 충족하면 인가처리 해야 하는지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폐쇄인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폐쇄인가의 요건이 충족하면 당연히 인가를 내주어야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며, 유치원 폐쇄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어, 유치원 폐쇄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감사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인가를 보류할 수 있으나, 별도의 감사지적 사항이 없다면 폐쇄인가에 필요한 서류가 충족된 이상 인가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6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따른 절차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정보공개 절차 - 정보공개 시기를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라 즉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 진행 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일만 남았을 뿐, 그 외에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여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판결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절차 준수해야 한다면 제3자 의견 통지 및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제3자 비공개 요청 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 30일 간격 유지 등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는지 여부</li> <li>- 유치원명 및 원장 실명이 제3자와 관련 있는 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li> <li>-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으로 행정소송 판결에 반하는 “정보 비공개 결정” 가능 여부</li> <li>- 제3자가 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 시 소송 진행 가능 여부</li> <li>- 제3자가 행정소송 제기 시 소송 판결 선고·확정될 때까지 정보공개 유보 여부</li> <li>- 제3자 행정소송 제기 시 기존 청구인 소송 판결문에 반하는 비공개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li> </ul>	<input type="checkbox"/>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재처분 함에 있어 정보공개법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li> <li>- 유치원 및 원장실명은 제3자의 관련 있는 정보로 사료됨</li> <li>- 제3자는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li> <li>-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정보 공개를 유보해야 하는 것은 아님</li> <li>- 제3자의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관련 심리를 한 결과 그 주장의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제3자의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도 가능하다 사료 됨.</li> </ul>
17	A외국어학원 민원 관련 행정처분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행정처분 가능여부가 모호한 사항에서 명확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학원의 등록외 교습과정 여부, 강사등 채용 및 해임 미통보, 무자격강사 강사 채용, 강사등 인적사항 허위 게시, 기타 학원 불법 운영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원의 등록외 교습과정, 강사 등 채용 및 해임 미통보, 행정직원의 교습행위(무자격강사로 볼 수 없으나 기타불법운영에 해당) 처분 가능, 강사 등 인적사항 허위 게시는 판단 필요, 기타 학원 불법 운영 처분불가하다고 사료됨
18	A외국어학원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원의 명칭사용 위반 여부 및 교습비 미등록 사항의 행정처분 가능 여부 질의	<input type="checkbox"/> 학원의 명칭사용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습비 미등록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19	사립유치원 변경인가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원사 및 원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압류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원 교사 평면도(체육장 포함) 변경 인가가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당해 유치원 교사 평면도의 변경 인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원지·원사의 소유권은 유치원 설립자에게 있음(등기부상의 압류등기만으로 그 소유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li> </ul>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 유치원 원지·원사에 대한 압류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저촉되어 무효임으로 원지·원사에 설정된 압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20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항소제기 여부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유치원 감사결과 및 적발된 유치원명, 원장 실명을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감사결과는 부분공개, 유치원명과 원장 실명은 비공개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자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됨. 항소 제기 검토를 위한 “항소제기여부” 자문 요청	<input type="checkbox"/> 1심 판결이 취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1	A초 이전에 따른 기본협약서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한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교가 요구하는 통학차량 대수는 3대임에도 불구하고 2대만 지원한다고 할 경우 B구청과의 협약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교가 요구하는 차량분이 객관적으로 전혀 불필요하다거나 과도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B구청의 제안은 기본협약서상 채무의 본지에 따른 완전한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A초 이전에 따른 기본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적 효력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효력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대응 방안은	<input type="checkbox"/> B구청이 기본협약서 내용에 따른 통학차량 지원을 불이행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기준 대수는 매년(협약서 기한 내 학년도 마다) 5대 이내에서 학교의 판단에 따라 적정 대수를 결정하여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교측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것이라면, 매년 5대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22	지분이전등기 판결 경정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망자에 대한 판결 경정 신청 상대자는	<input type="checkbox"/> 판결 확정 후 사망자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피상속인 확인 후 판결 경정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경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input type="checkbox"/>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
		<input type="checkbox"/> 상속인들에게 공유지분 경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input type="checkbox"/> 판결 시 공유지분 착오 사유 기재 및 증빙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23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1959.4.24. 이전에 토양오염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input type="checkbox"/> 과거 토양오염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input type="checkbox"/> 일본민법전(구민법)에 해당 조항이 있다면 현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input type="checkbox"/>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
24	망자에 대한 판결 경정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망자에 대하여 판결 경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망자의 상속인들에게 판결 경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망자에 대하여 판결 경정할 수 있으며, 보정명령 시 보정을 통하여 처리하면 됨
			<input type="checkbox"/> 망자에 대하여 판결 경정한 후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됨
25	사립유치원 직원 징계에 관한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징계혐의자의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징계의결 결과(교원경징계, 감봉3월)가 중대한 하자(절차, 주체 등)로 무효가 됐고, 현재 퇴직한 상태로 직위가 상실된 경우 교원이 아닌 행정직으로 소급 적용하여 재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이미 퇴직한 자에게 교원이 아닌 행정직으로 소급징계를 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어 불가능
26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항소 제기 여부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 청구자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패소함. 이에 따른 항소 제기에 관한 자문	<input type="checkbox"/>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근거가 매우 상세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의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27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정보공개시 정보공개법 준용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정보공개시 정보공개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재처분을 함에 있어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일련의 절차, 즉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제12조, 제18조 등) 및 제3자의 이의신청(제21조) 등은 모두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되어야 함
28	정보공개 처리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처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관내 수사·재판 중인 유치원에 대한 유치원명 및 원장명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일련의 절차 완료 후에 수사·재판 중인 유치원에 대한 유치원명 및 원장명 공개가 가능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input type="checkbox"/> 기존의 정보공개 처리절차와 더불어 수사·재판 중인 유치원 명단 및 원장 실명 공개 여부에 대하여 재처분의무가 있고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재처분해야 하나,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수사·재판 중인 유치원 설립자 실명을 판결을 근거로 공개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확정판결을 근거로 설립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음. 다만, 설립자의 실명 공개 청구가 있으면, 이 사건과 별도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인 유치원의 수사 의뢰사유 및 감사보고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4호, 5호, 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수사의뢰 사유와 감사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수사의뢰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처분을 할 수 있음. 감사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5호, 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다른 관련자의 실명 등의 부분만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29	집행정지인용 결정에 따른 항고 제기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집행정지인용 결정에 따른 항고 제기에 따른 실익 여부	<input type="checkbox"/> 집행정지결정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하므로 집행정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사료됨
30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정보공개시 정보공개법 준용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첫 번째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근거로 두 번째 신청한 정보공개를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첫 번째 정보공개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근거로 이와 별개의 사건인 두 번째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을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유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사유를 들어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31	사립유치원 인가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1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 일체를 운영권과 함께 처분하면서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을 한 경우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운영권과 함께 토지, 건물 등을 포괄적·일괄적으로 매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자 변경인가는 가능함
32	사립유치원 인가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2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이 경영 악화를 사유로 폐원을 희망하나 2012년 교육부 특정감사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폐원신청 시점까지 미이행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처분에 대한 미이행을 사유로 폐원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행정소송과 감사처분을 별개의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폐원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감사처분 미이행을 사유로 폐원인가 신청을 반려할 법적 근거 없음 <input type="checkbox"/> 행정소송과 감사처분 미이행이 별개라는 교육부 주장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행정소송과 감사처분 미이행에 대한 이행 촉구는 별개의 사항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사료됨
33	000000센터 위탁경영 계약서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이 0000000공단과 체결한 000000센터 위탁경영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이 교육청에 불평등하고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를 비롯한 법적 대응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대등한 기관끼리의 계약이므로 사기나 강박 등의 사유가 없다고 볼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는 한쪽에 불리한 계약도 그 내용을 감수하려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계약 체결 등의 무효 및 취소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서상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4	000000센터 생존수영 위탁계약 계약해지 조항 해석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방의 ‘대표’가 구속된 사안이 계약서상 계약 해지 조항인 「사회적 물의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능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해당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단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는 사단업인의 행위로 봐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대표자가 설립한 개인업체로 보여지므로, 해당 규정에 의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계약이행능력 불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며, 사업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35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항소제기 여부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유치원 감사결과 및 적발된 유치원명, 원장 실명을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감사결과는 부분공개, 유치원명과 원장 실명은 비공개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자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됨. 항소 제기 검토를 위한 “항소제기여부” 자문 요청	<input type="checkbox"/> 항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사료됨
36	00초등학교 지적측량을 이유로 한 주거지 무단침입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이해관계인이 의도적으로 지적측량에 관련된 일시 및 장소 등이 안내된 내용증명 문서를 수취 거부할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2항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이해관계인이 내용증명 문서를 수취 거부할 경우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제101조 제2항의 ‘통지’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input type="checkbo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16진정0528500 ‘측량을 이유로 한 주거지 무단침입’)을 사유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토지에의 출입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헌법」 제16조와 관련된 주거지무단침입의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제101조 제2항과 제8항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는 없음
		<input type="checkbo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법원 판결문을 구비하지 않고서는 지적측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지원청에서는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소제기 후 승소하여야만 측량이 가능한지 여부와 승소 가능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국토정보공사가 측량을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측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승소 여부는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제 101조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37	태양광발전설비 미지급금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2005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완료 시점에 계약서 내용과 상이하게 설치된 부분이 있어 이행각서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input type="checkbox"/> 법적으로 공사대금 청구는 가능하며, 또한 학교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p>부분들이 있어서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임. 000000(주)가 법정관리를 들어가게 되어서 최근 다시 대금지급 요구가 있었고, 현재 학교 법인의 재정상 지급 능력이 전무한 상황으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3호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000000(주)에서 법적으로 가압류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제기 가능함</p> <p><input type="checkbox"/>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판단됨. 다만, 2006년 4월 28일에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지급껏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사채권 5년이나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에 해당하여 지급할 책임을 면한 것으로 보여짐</p>
38	<p><b>학교급식계약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b></p>	<p><input type="checkbox"/> 학교에서 반품 요구한 식재료를 납품업체에서 수거하지 않고, 납품업체는 위 식재료를 포함한 식재료 납품금액을 학교에 청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품 요구했으나 수거하지 않은 식재료의 처리 방법</li> <li>- 반품 요구한 식재료를 제외한 식재료 대금 지불 방법</li> </ul>	<p><input type="checkbox"/>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상대자(업체)는 반품 요구한 식재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사료됨.</li> <li>- 반품요구한 식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품대금은 학교에서 대가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반품요구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납품대금을 공탁할 수 있음</li> </ul>
39	<p><b>방과후 위탁용역 업체의 채권양도 관련 법률 자문</b></p>	<p><input type="checkbox"/> 방과후 위탁용역 업체와 방과후 위탁용역 업체 소속 강사와의 채권양도가 가능 한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가능. 채권양수인과 채권양도금액을 명시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어야 할 것이며, 채권양도통지를 받아 채권양수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본교에 대한 채권은 소멸된 것임</p> <p><input type="checkbox"/> 채권양도 가능. 학교 측이 강사료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통지나 채권양도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 두고 직접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p>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input type="checkbox"/> 강사들에게 직불이 이루어진 이후에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이 왔다면 문제될 것은 없음. 다만, 직불한 것이 적법하나 하는 문제를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제기할 가능성은 있음
40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공고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시 소상공인과 자격 제한의 법률 위반 여부(여성기업으로 대체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역제한 및 소상공인 계약 제한이 중복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인증 대신 여성기업 인증으로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소기업이 아닌 중기업도 자격 충족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기본법 2조 3항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확대)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공고이므로 자격요건을 명시(소상공인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중복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함 <input type="checkbox"/>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은 별개의 개념으로 여성기업 대체 불가 <input type="checkbox"/> 중기업과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구별되는 개념으로 자격을 충족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법 2조 3항의 규정은 중기업 확대 시 적용되지 않음
41	급식업체 계약 해지 및 부정당제재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계약사양과 상이한 물품 납품 및 교환 요청 미이행을 근거로 급식 업체와 계약 해지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서에 계약사양으로 정해진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대로 납품되어야 하므로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계약해지가 가능 <input type="checkbox"/> 계약에 따라 전통식품품질인증서가 있는 고춧가루 및 국산돼지고기 함량이 90%이상인 햄을 납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도 없으므로 「식재료 구매 특수조건」 제16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계약해지가 가능 <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 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기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는데 2가지 품목의 나머지 품목이 정상적으로 납품되고 있다면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는 어려워 보임.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input type="checkbox"/> 전통식품인증 고춧가루 및 햄 성분 함량 기준은 하자라기 보다 선호도의 차이로 보여짐. 유통기한이 지났다거나 이물질이 함유된 것은 아니므로 하자있는 물품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며 계약해지나 반품의 조건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혹여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물품을 개봉하지 말고 즉시 반품을 하여야 하며, 대체품 필요시 별도로 다른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에 따른 차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귀교의 경우 물품을 반품하지도 않았고 그대로 사용한 것은 혹여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정산은 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 및 해당 물품대에 대한 공탁 또한 어렵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급식업체에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하자있는 납품으로 급식업체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사료됨 - 1호: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6호: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 생략)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현품설명서 등)의 물품 납품을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대로 품질 미달의 대체품(전통식품품질 미인증 제품, 성분 함량 미달 제품 등)을 납품할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가 어렵다면 이 외의 다른 제재 방법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양에 안 맞는 물품을 해당업체에 반납하고 급히 다른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2가지 품목의 나머지 품목이 정상적으로 납품되고 있다면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는 어려워 보임.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42	재학생 사망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생 사망 사건의 처리 절차 및 과정 질의	<input type="checkbox"/> 사망사건을 날짜별, 시간순서로 정리하여 사건 파악 및 대응하도록 절차 안내